

구리시 고시 제2021-171호

구리시 인창·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

경기도 고시 제2010-158호(2010.5.11.), 경기도 고시 제2013-108호(2013.4.23.), 경기도 고시 제2016-81호(2016.5.18.), 구리시 고시 제2016-83호(2016.7.20.), 구리시 고시 제2016-107호(2016.10.11.), 구리시 고시 제2017-121호(2017.10.13.), 구리시 고시 제2018-80호(2018.7.9.), 구리시 고시 제2018-171호(2018.12.28.), 구리시 고시 제2019-76호(2019.5.28.) 및 구리시 고시 제2020-65호(2020.5.27.), 구리시 고시 제2021-16호(2021.02.08.), 구리시 고시 제2021-21호(2021.02.26.)로 결정·고시된 구리시 인창·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에 대하여 『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1. 12. 30.

구 리 시 장



1. 재정비촉진지구 개요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2. 목표연도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3. 기본방향 및 목표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4.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의 개요
 - 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
- 2) 인구·주택수용계획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3)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4)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6) 교통계획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7) 경관계획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8)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9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10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[변경없음]
- 11)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

가. 촉진구역 기반시설부지 분담계획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
나.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: 무상귀속 방식

- 촉진구역 내부 공원·도로 등의 일반적 대중이 직접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, 특정인·특정목적에 위한 공공시설(커뮤니티시설)은 공공부담
- 기반시설 설치에 재정비촉진계획상의 촉진구역별로 결정된 기반시설의 설계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·조성하여 기부채납(무상귀속) 하는 것으로 함

구 분	커뮤니티시설 설치비용	도로·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비용	비 고
공 공	○	-	
민 간	-	○	

※ 기반시설비용 분담대상 시설 중 커뮤니티시설 설치비용은 공공부담을 원칙으로하며, 사업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분담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(기반시설 중 커뮤니티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협약 등을 통해 상호협의하는 바에 따라 설치비용 등을 조정하여 분담할 수 있음)

- 12)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13) 기타계획 (방재계획, 정보화계획, 에너지순환계획, 자족성계획, 여성친화계획,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계획)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14)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15)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(CPTED) 적용 계획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16)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17)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
- 18)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[변경없음] - 게재생략